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448
------------	------

2017년 4월 2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6년 12월 19일 상정·심사보류)
-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2월 20일 상정·심사보류)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4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가. 제안이유

-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 승용·승합자동차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 차등 적용
 - 이륜자동차는 경형자동차와 동일하게 견인료 적용(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 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로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도로교통법』 제35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²⁾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매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소요비용(견인료 및 보관료)으로 견인료는 차량의 중량별로 40,000원~115,000원을, 보관료는 1회 보관료 한도를 50만원으로 하되 6.5톤 미만은 30분당 700원, 6.5톤 이상은 30분당 1,200원을 부과하고 있음

동 개정조례안은 차량중량별로 부과하는 소요비용을 승용·승합·이륜·화물·특수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로 부과하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경형·소형·중형·대형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견인료를 최소 0%~최대 50% 인상하는³⁾ 한편 대형승합자동차의 보관료를 인하하고,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1)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 후략 -

2)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 후략 -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시내버스와 같은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중량이 보통 15톤에 해당되어 현재 견인료(115,000원)에 비해 약 30.4% 인하효과가 있음

현재와 같이 중량에 따라 견인료를 부과하되 최대 30.4% 인상하며, 현재 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륜자동차⁴⁾에 대해서는 40,000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 참고 : 조례 개정에 따른 견인료 인상을 현황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인상율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 자동차	경형	40,000원	0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륜자동차의 보관료 신설).
피견인 차량의중량	2.5톤미만	40,000원		소형	45,000원	12.5	
				중형	50,000원	25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대형	60,000원	50	
			승합 자동차	경형	40,000원	0	
소형	60,000원	50					
중형, 대형	80,000원	21.2 △30.4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륜자동차		40,000원	신설	
10톤이상	115,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0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30.4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30.4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21.2	
10톤 이상	140,000원	21.7		10톤 이상	140,000원	21.7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견인요금이 '9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그 동안 물가, 유류비,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견인료 현실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06년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시민감사청구 결과⁵⁾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원가분석을 통해 견인료 및 보관료 조정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음

또한 서울시가 39개 견인대행 업체(별첨 1 참고⁶⁾) 중 민간대행 업체 29개소⁷⁾의 2013년 수입비용 분석결과⁸⁾ 견인 1건당 10,448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하여 25% 정도의 견인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 : 견인업체 운송원가 산정결과

비용내역(원)				수입내역(원)			견인한건당 수지(수입-비용)
소계	차량비	인건비	일반 관리비	소계	견인	기타	(수지율)
53,462	14,520	28,316	10,626	43,014	41,520	1,494	<u>-10,448</u> (80.5%)

또한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은 승용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차량과손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위험이 높은 고급차량 및 외제차에 대한 견인을 기피하고, 중소형차 위주의 견인을 유도함으로써 견인 형평성 시비와 함께 시민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17년간 동결된 견인요금 현실화로 인해 견인업체의 경영난 완화 및 견인업체 폐업⁹⁾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각 차종별 배기량 및 크기에 따른 견인료 차등부과로 고급차 등에 대한 견인 유도와 함께 견인형평성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임

5) 민원담당관-6194(‘06310.4)

6) 용역수행 당시의 견인업체와 ‘16년 10월 현재의 견인업체 수에서 일부 변동 내역이 있음

7) 자치구 공단 직영 10개소를 제외한

8) 서울연구원(2014.11),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9) 견인업체수는 ‘06년 33개 업체에서 ‘15년 28개 업체로 감소하였고, 견인차량도 238대에서 149대로 감소하였음

참고로 부산, 대구 및 인천 등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같이 차량 중량에 따른 견인료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각 차량중량 구간 별로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기본요금(5km) 외에 1km 당 추가요금을 받는 구조로 견인요금을 부과하고 있음¹⁰⁾(별첨 2 참고)

- 다만, 최근 10년 동안의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견인 건수를 살펴보면 견인건수 및 견인률이 '04년에 비해 대폭감소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반해 자치구의 경우 민원유발이 높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 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차” 스티커 위주로 발부하는 등 각 자치구별로 견인에 대한 방침이 달라 견인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에 기인하고 있음¹¹⁾(별첨 3 참고)

※ 참고 : 각 연도별 단속 및 견인건수 현황

구 분	2004년	2006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8
단 속(건) (A)	3,516,245	3,370,380	...	2,709,292	2,648,506	3,015,286	2,124,912
견 인(건) (B)	512,848	298,131	...	124,718	118,494	109,982	77,123
견인률(%) (B/A)*100)	14.6	8.8	...	4.6	4.5	3.6	3.6

- 결국 견인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견인실적 하락에 따른 것으로 견인실적 증가시 요금 인상이 불필요한 상황이며,

10)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견인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견인거리가 짧아 추가 거리에 따른 요금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

11) 영등포, 강남, 송파, 서초구의 견인실적이 높으며, 노원구의 경우 견인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¹²⁾에서도 견인차량 1대당 1일 견인실적이 5.37건에서 6.71건으로 증가할 경우 견인업체의 적자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견인단속 강화정책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은 교통소통 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 이전에 자치구의 견인을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및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고, 지방경찰청장의 범칙금 부과 규정만 있다는 점에서¹³⁾

동 규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삭제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다른 자동차들의 보관료는 변동없이 대형승합자동차의 보관료만 인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인 바, 현행과 같이 보관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12) 서울연구원(2014.11), “견인 원가분석 및 견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p.88.

1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별첨 1] 서울시 견인업체 현황('16년 10월 현재)

담당지역	상 호	주 소	인원	차량보유 대수				
				계	일반	리프트	휴지	현재
총계	총 38개		130	163	12	148	48	107
일반 민간업체 28개			12	128	56	83	56	0
종로	와룡상사	종로구 종로221, 327호(종로5가, 효재빌딩)	3	3	0	3	0	3
중구	삼문상사	중구 충무로4가 120-3 진양@	3	6	0	6	3대 휴지	3
	구일상사	513호	2	5	0	5	3대 휴지	2
성동, 광진	해동통상산업	성동구 왕십리로31길 17	4	4	0	4	1대휴지	3
중랑, 광진	대신통운산업(주)	중랑구 면목천로33(면목동)	4	4	0	4	0	4
성북·동대문	영도렉카(주)	동대문구 장한로33길 44-5(장안동)	1	4	1	3	3대휴지	1
동대문	승산특수운수	동대문구 한천로 223(전농동)	2	1	0	1	0	1
강북, 도봉	태원특수운수	도봉구 도봉산3길 41	5	4	0	4	1대휴지	3
노원	노원렉카	노우너구 공릉동 461-2	7	6	2	4	0	6
은평	(주)명한환경	은평구 수색동 72-13	1	4	3	1	3대휴지	1
서대문	재동렉카	서대문구 홍제동 365-3	0	1	1	0	1대휴지	0
	(주)대합에프에스엠	서대문구 홍제동 365-3	1	1	0	1	0	1
용산, 마포	코리아특수운수	용산구 이촌로9	2	7	1	7	5대휴지	2
	용미특수운수	용산구 독서당로 47	4	5	0	5	1대휴지	4
마포	한국하이테크운수	용산구 이촌로9	3	10	0	10	7대휴지	3
강서	남양렉카	강서구 강서로39길 13	3	3	0	3	0	3
강서, 양천	오신산업(주)	강서구 양천로462(등촌동 64-4)	7	7	0	7	0	7
영등포	해밀자동차(주)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2 더실크 509호	5	5	0	5	1대휴지	4
	국제자동차(주)	영등포구 문래동5가 2 대륭빌딩 404호	4	5	0	5	1대휴지	4
금천, 동작	상일산업	관악구 신림2동 94-272	4	5	1	4	1대휴지	4
구로, 관악	상일산업	관악구 서림동 94-272	4	5	0	5	1대휴지	4
서초	씨규산업	서초구 양재동 248 종선B/D 302	3	7	0	7	7대휴지	0
	서초특수운수	서초구 청계산로 217, 254호	3	5	0	5	3대휴지	2
강남	선진월드	강남구 논현리2길 1907(개포동) 산별빌딩 402	4	9	2	7	5대휴지	4
	동양렉카	강남구 현릉로 734(세곡동)	4	8	1	7	3대휴지	5
송파, 강동	부흥운수	송파구 방이동 69-10 부흥빌딩6층	4	7	0	7	3대휴지	4
	강동운수	송파구 방이동 69-10 부흥빌딩6층	5	8	0	8	3대휴지	5
대형차량 1	서울대형특수운수	송파구 방이동 69-10부흥빌딩6층		3		3	3대휴지	0
구공단 11		11개 자치구	4	19	0	23	0	0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 마장동 527-10	1	1	0	1	0	1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 장한로18길 82-9(장안동)	0	1	0	1	0	1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 상월곡동 24-348	2	1	0	1	0	1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 도봉동 746-17	1	1	0	1	0	1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 가양동 450-2	8	5	2	3	0	5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 목동서로 190(목1동 919-5)	0	1	1	0	0	1
-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 신길7동 869	7	4	0	4	0	4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 시흥3동 985-26	4	3	0	3	0	3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구 삼성로 628	3	3	0	3	0	3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 충민로66 가든파라드 라이프동 테크노관10층	3	3	1	2	0	3
-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원구 동일로 1229 구민회관 1층	9	1	0	1	0	1

[별첨 2] 국내 주요도시 견인요금 현황

(단위 : 원)

도시	2.5톤 미만	2.5톤~6.5톤	6.5톤~10톤	10톤 이상
서울	40,000	46,000	66,000	115,000
부산	40,000(5km) 1km당 1,000 추가	45,000(5km) 1km당 1,4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대구	30,000(5km) 1km당 1,000 추가	35,000(5km) 1km당 1,4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인천	30,000(5km) 1km당 1,000 추가	35,000(5km) 1km당 1,4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광주	20,000(5km) 1km당 1,000 추가	25,000(5km) 1km당 1,400 추가	40,000(5km) 1km당 2,500 추가	40,000(5km) 1km당 2,500 추가
대전	30,000(5km) 1km당 1,000 추가	35,000(5km) 1km당 1,4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울산	30,000(5km) 1km당 1,000 추가	35,000(5km) 1km당 1,4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50,000(5km) 1km당 2,500 추가

[별첨 3] 자치구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실적 현황

(단위 : 건, '16.9월말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9월	
	단속건수	견인건수	단속건수	견인건수	단속건수	견인건수	단속건수	견인건수
합계	2,221,913	118,494	2,557,894	109,982	2,555,320	110,350	2,036,146	89,265
종로	134,909	4,222	135,420	4,639	120,726	4,729	112,347	3,125
중구	124,131	14,060	184,545	13,810	214,733	10,572	125,459	5,863
용산	70,434	3,434	69,031	3,595	71,910	14,921	51,336	4,853
성동	90,320	618	108,165	693	111,981	346	83,898	2,538
광진	45,187	476	50,933	343	47,954	693	30,268	409
동대문	63,419	1,900	87,401	2,326	68,754	707	38,074	1,745
중랑	54,363	3,147	55,105	2,487	53,374	2,514	44,467	5,174
성북	38,829	323	43,370	173	51,741	181	35,451	189
강북	19,682	2,420	27,293	2,396	28,423	1,394	29,862	2,925
도봉	32,723	389	30,541	125	51,106	114	42,226	119
노원	38,271	122	35,956	23	55,871	149	54,387	64
은평	66,815	341	73,575	313	87,785	216	65,214	702
서대문	42,281	587	69,940	420	62,296	287	48,789	226
마포	86,783	1,326	114,506	1,215	101,852	1,449	101,387	689
양천	62,298	1,514	94,379	182	73,743	195	59,613	173
강서	82,279	7,262	89,958	8,754	69,616	10,629	58,127	8,334
구로	82,225	435	86,667	517	87,084	1,019	57,085	4,085
금천	46,117	1,871	48,844	1,251	43,068	996	50,791	1,769
영등포	114,408	16,921	131,615	15,726	103,016	13,045	90,406	11,112
동작	62,595	665	62,430	435	92,893	2,070	76,202	2,602
관악	79,241	856	99,127	755	99,554	1,249	79,151	995
서초	230,351	14,277	235,198	11,262	245,415	9,987	188,783	5,723
강남	370,744	19,951	387,449	18,534	414,844	16,939	346,225	13,819
송파	104,787	13,308	151,894	12,102	108,174	8,904	90,252	5,190
강동	78,721	8,069	84,552	7,906	89,407	7,045	76,346	6,842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차령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차등부과 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이륜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고 차령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임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홍보 부족 및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가 무분별하게 견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동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대형 승합자동차의 견인료는 인상하고,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보관료는 현행과 같이 하는 한편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신설함(안 부칙 제1조)
- 대형 승합자동차의 견인료 인상 및 차령에 따른 견인료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부칙 별표)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8
----------	---------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홍보 부족 및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가 무분별하게 견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동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대형 승합자동차의 견인료는 인상하고,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보관료는 현행과 같이 하는 한편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골자

- 가.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신설함(안 부칙 제1조)
- 나. 대형 승합자동차의 견인료 인상 및 차령에 따른 견인료 감면을 신설함(안 부칙 별표)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시장제출안)	수정안(전문위원실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3">소요비용 산정기준</th> </tr> <tr> <th>구분</th> <th>견인료</th> <th>보관료</th> </tr> <tr> <td>피견인 차량의 중량</td> <td></td> <td></td> </tr> <tr> <td>2.5톤미만</td> <td>40,000원</td> <td>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의 한도로 한다.</td> </tr> <tr> <td>2.5톤이상 6.5톤미만</td> <td>46,000원</td> <td></td> </tr> <tr> <td>6.5톤이상 10톤미만</td> <td>66,000원</td> <td>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의 한도로 한다.</td> </tr> <tr> <td>10톤이상</td> <td>115,000원</td> <td></td> </tr> </table>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견인료	보관료	피견인 차량의 중량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의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의 한도로 한다.	10톤이상	115,000원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견인료</th> <th>보관료</th> </tr> <tr> <td rowspan="4">승용자동차</td> <td>경형</td> <td>40,000원</td> </tr> <tr> <td>소형</td> <td>45,000원</td> </tr> <tr> <td>중형</td> <td>50,000원</td> </tr> <tr> <td>대형</td> <td>60,000원</td> </tr> <tr> <td rowspan="3">승합자동차</td> <td>경형</td> <td>40,000원</td> </tr> <tr> <td>소형</td> <td>60,000원</td> </tr> <tr> <td>중형, 대형</td> <td>80,000원</td> </tr> <tr> <td>이륜자동차</td> <td colspan="2">40,000원</td> </tr> <tr> <td rowspan="4">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td> <td>25톤 미만</td> <td>40,000원</td> </tr> <tr> <td>25톤 이상 65톤 미만</td> <td>60,000원</td> </tr> <tr> <td>65톤 이상 10톤 미만</td> <td>80,000원</td> </tr> <tr> <td>10톤 이상</td> <td>140,000원</td> </tr> </table> <p>※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p>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안과 같음)</p> <p>[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견인료</th> <th>보관료</th> </tr> <tr> <td rowspan="4">승용자동차</td> <td>경형</td> <td>40,000원</td> </tr> <tr> <td>소형</td> <td>45,000원</td> </tr> <tr> <td>중형</td> <td>50,000원</td> </tr> <tr> <td>대형</td> <td>60,000원</td> </tr> <tr> <td rowspan="4">승합자동차</td> <td>경형</td> <td>40,000원</td> </tr> <tr> <td>소형</td> <td>60,000원</td> </tr> <tr> <td>중형</td> <td>80,000원</td> </tr> <tr> <td>대형</td> <td>140,000원</td> </tr> <tr> <td>이륜자동차</td> <td colspan="2">40,000원</td> </tr> <tr> <td rowspan="4">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td> <td>25톤 미만</td> <td>40,000원</td> </tr> <tr> <td>25톤 이상 65톤 미만</td> <td>60,000원</td> </tr> <tr> <td>65톤 이상 10톤 미만</td> <td>80,000원</td> </tr> <tr> <td>10톤 이상</td> <td>140,000원</td> </tr> </table> <p>※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p> <p>※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견인료	보관료																																																																																					
피견인 차량의 중량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의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의 한도로 한다.																																																																																					
10톤이상	115,000원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8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 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소요비용 산정기준</th> </tr>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견인료</th> <th style="width: 50%;">보관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견인 차량의중량</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이상 6.5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6,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톤이상 10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00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5,000원</td> </tr> </tbody> </table>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견인료	보관료	피견인 차량의중량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이상	115,000원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견인료</th> <th style="width: 60%;">보관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승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승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00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이륜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톤이상 6.5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톤이상 10톤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00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p> <p>※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미만	40,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60,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80,000원	10톤이상	140,000원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견인료	보관료																																																			
피견인 차량의중량																																																					
2.5톤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이상	115,000원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미만	40,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60,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80,000원																																																			
	10톤이상	140,000원																																																			